

- 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)
- 2.시행일: 2026. 10. 19
- 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부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지서식 제5호]					[별지서식 제5호]				
대출거래약정서 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					대출거래약정서 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				
제1조 거래조건					제1조 거래조건				
대출 과 목				대출 금 액	금 원				
대출 개시일	20	년	월	일	대출 만료일	20	년	월	일
대출이 자율	변 동 금 리	5년 단위		(생략)					
		기타		(생략)					
		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 금 대출		(생략)					
				(생략)					
	고 정 금 리	수익공유 형 (신혼희망 타운 전용 상품 포함)		(생략)					
		손익공 유형		(생략)					
		기타		(생략)					
	10년 고정 후 변동금리		(생략)						
	※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								

대출 과 목				대출 금 액	금 원				
대출 개시일	20	년	월	일	대출 만료일	20	년	월	일
대출이 자율	변 동 금 리	5년 단위		(현행과 같음)					
		기타		(현행과 같음)					
		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 금 대출		(현행과 같음)					
				(현행과 같음)					
	고 정 금 리	수익공유 형 (신혼희망 타운 전용 상품 포함)		(현행과 같음)					
		손익공 유형		(현행과 같음)					
		기타		(현행과 같음)					
	10년 고정 후 변동금리		(현행과 같음)						
	※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								

현 행		개정안	
※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※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. ※ 고정금리 선택 시 0.3%p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.2%p,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.1%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 ※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,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. ※ <신 설>		※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※ 본 약정서 상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※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. ※ 고정금리 선택 시 0.3%p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.2%p,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.1%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 ※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,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. ※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최초 신규 시 보증금별 최고금리에 0.3%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	
구 분	구입자금	구 분	구입자금
기준 금리 적용 기준	(생 략)	기준 금리 적용 기준	(현행과 같음)
			전세자금
			(생 략)
			(현행과 같음)

제10조 기한연장 및 목적물 변경

① (생 략)

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2%(단, 갹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(대출 담보 보증서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) 이하인 경우 0.1%)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제10조 기한연장 및 목적물 변경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(대환 포함),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.2%(단, 갹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(대출 담보 보증서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) 이하인 경우 0.1%)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(단, 대출기간 중 혼인하여 본인 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0.15%)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현 행	개정안
③~⑥ (생 략) ⑦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(창업)청년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 단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<u>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u>	③~⑥ (현행과 같음) ⑦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(창업)청년 우대금리 요건 충족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 단,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,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<u>최고금리에서 0.3% (단, 대출기간 중 혼인하여 본인 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0.15%)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u>